2023.4.24

KiRi 리 포 트 포커스

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시사점

강성호 선임연구위원

요 약

○ 최근 국회의 연금특위 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구조개혁으로 연금개혁 방향을 전환했으며,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역할 강화 요구가 기대됨

○ 우리나라의 적정 노후소득이 부부 월 277만 원, 개인 177만 원이라는 점에서 현재 국민연금 월 급여 58만 원은 매우 낮아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- 50대 이상 중·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노인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 원, 개인은 177만 3천 원으로 이를 적정소득대체율로 환산하면 각각 72.3%, 46.2%로 추정됨
-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소득 58만 원은 소득대체율의 15.1% 수준이며, 이는 개인 기준 적정소득대체율에도 훨씬 미치지 못함으로 퇴직연금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○ 우리나라 현 퇴직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16.4%로 양호하나 적용 대상이 4.3%로 낮다는 한계가 있으며, 일시금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2.1%에 그침

- 퇴직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(소득대체율)은 평균 근로소득(월 383만 원)의 16.4%로 양호한 편이나, 전체 대상자의 4.3%(수급률)만 수급하며, 전체 퇴직급여자의 소득대체율은 2.1%로 매우 낮음
- 퇴직급여자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주 원인으로 중도인출 및 해지에 따른 연금자산 감소를 들 수 있으며, 중도인출 및 해지로 인해 감소되는 소득대체율은 1.3% 수준으로 추정됨

○ 퇴직연금에 충실히 가입한 신규 퇴직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40년(25년) 가입 기준 13.3%(8.3%)로 추정되고, 추가 기여 및 투자수익률 제고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추가적으로 높아짐

-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해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가정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(25년) 가정 시 13.3%(8.3%)로 추정됨
- 현행 퇴직연금 보험료율 8.3%에 IRP 추가납부를 통해 보험료율이 16.0%까지 증가할 경우, 소득대체율은 40년(25년) 가입 기준 13.3~25.6%(8.3~16.0%)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
- 투자수익률이 3.0%에서 6.0%까지 증가할 경우, 소득대체율은 40년(25년) 가입 기준 13.3~25.3%(8.3~12.3%)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

○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오래 가입하고 추가로 납부하고, 가입 중 누수를 막고, 수급단계에서 연금형태의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됨

1. 서론

○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(이하, '자문위')는 최근 연금개혁 방향을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전환하였으며,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역할 강화가 요구될 것으로 기대됨

-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초점을 두지만,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모든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혁방향을 모색하는 것임
- 이에 자문위 논의에서 퇴직연금에 대해 그 보험료 일부를 별도 계정에 납입하여 공적으로 운용하거나, 아예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여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제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

○ 퇴직연금은 낸 만큼 수령하는 수지상등을 전제로 하므로 재정중립 상태에서 노후소득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으나,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수급자의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노후자산으로 현실적 한계가 있음

- 퇴직금은 퇴직연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, 자동으로 퇴직금을 선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므로 노후자산으로 활용성이 낮음
- 퇴직연금은 중도인출, 이직 시 해지로 적립자산이 누수되는 경향이 있고, 주로 일시금 형태로 수령함에 따라 노후자산으로 한계가 있어 퇴직연금에 대한 재구조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

○ 본고는 현행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을 평가하고,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따른 소득대체율 수준을 추정함으로써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제고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

- 이를 위해 먼저, 우리나라의 적정 노후소득 수준에 대해 살펴보고,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현행 퇴직급여제도(퇴직금·퇴직연금으로 구성)에 대해 검토함
- 다음으로, 퇴직연금의 현재와 미래 상황을 고려한 소득대체율 추정을 통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함

2. 우리나라 퇴직급여 제도의 현황과 평가

○ 우리나라 적정 노후소득이 부부 월 277만 원, 개인 177만 원이라는 점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월 평균 연금소득 58만 원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가 요구됨

- 50대 이상 중·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노인이 필요한 월 생활비(적정 노후생활비)는 부부 277만 원, 개인 177만 3천 원으로 이를 적정 소득대체율로 환산하면 각각 72.3%, 46.2%[1])로 추정됨

---

1) OECD(2022), "Pension at a glance"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383만 원(연평균 4,600만 원)이며, OECD 남성 기준 소득대체율을 산출하여 국제비교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소득대체율(월 생활비/월 소득)을 산출함

•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소득 58만 원(2022년 11월 기준)[2)]은 소득대체율 15.1%(58만 원/383만 원)로 개인 기준 적정 소득대체율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국민연금은 재정문제로 인해 급여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음

  – 한편, OECD(2022)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충실히 가입하더라도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31.2%[3)] 수준으로 평가됨

○ 현재 중고령자의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기초연금·국민연금이 40.8%로 높았으며, 다음으로 배우자 소득·본인의 근로활동이 19.5%, 금융자산 및 퇴직(연)금 활용은 10.5%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(한신실 외 2022)

• 특히 퇴직(연)금의 노후생활비 용도로의 활용은 0.5%로 대부분 일시금으로 인출함에 따라 노후자산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줌

〈표 1〉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 생활비 및 적정 생활비

(단위: 만 원, %)

구분	필요 최소 노후생활비		필요 적정 노후생활비	
	부부 기준	개인 기준	부부 기준	개인 기준
금액	198.7	124.3	277	177.3
소득대체율[1)]	51.9	32.5	72.3	46.2

주: 1) 해당 금액을 월 평균 근로소득(383만 원)으로 나눈 값임
자료: 한신실·유희원·홍정민·박주혜(2022), 『제9차(2021년도)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소득 준비실태』를 참고하여 작성함

○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고, 자녀 결혼, 교육비 등[4)]을 충당하기 위해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함

•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시 원칙적으로 일시금 형태로 제공되며, 전체 퇴직급여 대상자(2020년 기준 1,186만 명) 중 퇴직금 대상자가 47.6%에 달해 노후소득자산으로 활용에 한계가 있음

• 퇴직연금(가입률 52.4%)은 사외적립으로 운용되므로 퇴직금에 비해 수급권 보장은 강하지만, 55세 이상 수급 대상자의 95.7%[5)]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

○ 특히, 우리나라 퇴직연금 자산은 55세 이전에 중도인출 및 해지로 인해 누수되는 경향이 있고, 이로 인해 수급 시 적립금이 적어 일시금 수령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자산의 누수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

• 퇴직연금은 수급연령인 55세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중도인출,[6)] 이직 시 해지[7)]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적립금 누

2)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(2023. 3. 27), 「국민연금 공표통계(2022년 11월 기준)」
3) OECD(2022), “Pension at a glance”에 의하면 38년 가입 기준으로 31.2%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성숙단계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27년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고려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예상 소득대체율은 22.2%(31.2%×27년/38년)로 추정할 수 있음
4) 보험개발원(2020), 『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』에 의하면 은퇴 후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용으로 1억 7,000만 원 이상 필요하나 퇴직금은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
5) 고용노동부 보도자료(2021. 4. 5), “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”
6)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주로 주택 구입(46.3%), 주거임차(16.3%) 등 주거 관련 비용으로 인출되는 경향이 있으며, 그 규모는 2조 6천억 원

수가 발생하고 있음

- 우리나라 평균 근속기간은 6.7년(2019년)[8]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애근로기간 동안 4~5회의 이직 과정에서 상당한 퇴직연금 자산이 누수될 것으로 예상됨

3.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추정

가. 기본가정 및 기초통계

○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시 사용하고 있는 제도변수 및 경제변수를 주요 가정변수로 활용하여 추정함

- 일반적으로 평균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A값[9](268만 원)을 활용하여 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나, 여기서는 국제기준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월 평균 근로소득 383만 원을 기준소득으로 활용함
  -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신규 근로자의 경우 40년[10]으로 하고(현실 고려 시 25년[11]), 기존 근로자일 경우 근로자 평균연령(43.4세)을 고려하여 10년[12]을 추가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 소득대체율을 산출함
- 퇴직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기준인 8.3%로 하고, 임금상승률, 물가상승률, 투자수익률 등은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 가정을 활용하여 각각 3%, 2%, 3%로 설정함
  - 퇴직연금 보험료율은 IRP 추가가입을 고려하면 8.3%→10.0%→13.0%→16.0%[13]로 증가하고, 투자수익률은 3.0%→4.0%→5.0%→6.0%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함

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전체 적립금(255조 원)의 1%가 누수됨(통계청 보도자료(2021), "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")

7) IRP는 2020년에 85만 8천 명의 계좌이전이 있었으며 그 중 84만 3천 명이 해지하였으며(계좌 기준 해지율 98.2%), 해지금액은 11조 원(금액 기준 해지율 72.9%)으로 누수금액이 전체 적립금(255조 원)의 4.3%에 달함(강성호(2022), 「주요국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과 시사점」, 『KIRI 리포트』 제562호)

8)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산출함(고용노동부(2020. 6), 「2019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」)

9) 국민연금의 전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(상한 있음)에 대해 3개년 치를 평균한 값을 의미함

10) 현행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40년으로 하여 연금액을 산출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동 기간을 소득대체율 산출에 적용함

11) 국민연금을 충분히 가입한다고 가정한 성숙기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27년 내외인데, 이를 고려하여 25년으로 설정함

12) 2021년 근로자의 평균연령 43.4세를 고려하여 퇴직시점까지 퇴직연금 추가 가입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함(고용노동부, 통계DB/직종, 학력, 연령계층,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)

13) 2021년 IRP 가입률(IRP 가입자 수/과세 대상 근로자 수)은 6.0%이며, 이들 가입자의 보험료율(연 납입액/총 급여액)은 7.7%로 나타남(국세청(2022), 『국세통계연보』). 따라서 현재 IRP 가입자의 퇴직연금 보험료율은 8.3%(사용자 부담분)+7.7%(본인 기여분)=16% 수준으로 추정됨

〈표 2〉 제도 및 경제변수 가정

구분		가정 값	근거 및 시뮬레이션 안
제도 변수	근로소득	383만 원(100만 원~550만 원)	2022 Pension at a glance
	가입기간	신규 근로자: 40년(25년) 기존 근로자: 10년	- 국민연금 법정(실태 반영) 소득대체율 산출 시 가입기간 - 근로자 평균연령 43.4세 고려한 근로기간(고용노동부, 통계DB)
	수급기간	25년 가정	은퇴(60세) 후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25년으로 설정
	퇴직연금 보험료율	8.3%(→10.0%→13.0%→16.0%)	DB 혹은 DC로 운영
경제 변수	임금상승률	3.0%	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의 가정을 준용
	물가상승률	2.0%	
	투자수익률 등	3.0%(→4.0%→5.0%→6.0%)	

○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추정은 현 수급자, 미래 수급자(현 퇴직연금 가입자), 그리고 중도인출 및 해지자, IRP 추가 납입자로 구분하여 산출하되, 분석 대상자의 2021년 기준 기초통계 현황은 아래와 같음

- 55세 이상 현 퇴직자의 퇴직연금 수급 건수[14]는 퇴직연금 수급대상자(39만 7천 건)의 4.3%인 1만 7천 건이며, 연금 수급 건당 금액은 1억 9천만 원 수준임
- 미래의 수급자라고 할 수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퇴직연금 가입대상자(1천 196만 명)의 53.3%인 684만 명이며, 이들의 현재까지의 적립금은 1인당 4,315만 원, 향후 적립금이 될 연 납입액은 1인당 730만 원임[15]
-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해지자 수는 퇴직연금 가입대상자의 7.5%인 90만 명이며, 이들에 의해 중도인출되거나 해지되는 금액(이하, '연 누수액')은 1인당 1,519만 원임
  - 단, 중도인출 및 해지자는 중도인출 및 이직 후 다시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, 이때 연 납입액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평균 근로소득액인 730만 원 수준으로 볼 수 있음
- IRP 추가 납입자 수는 퇴직연금 가입대상자의 10.8%인 129만 명으로 이들의 현재까지의 적립금은 1인당 938만 원, 향후 적립금이 될 연 납입액은 505만 원[16]임

14) 퇴직연금 수급자 수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건수로 제공되고 있어 건수로 설명함. 대부분 수급자 1명당 1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급률을 수급 건수로 산출하기도 함
15) 2021년 퇴직연금 가입자 683.8만 명, 적립금은 295조 원, 사용자 연 납입액은 49.9조 원, 근로자의 본인부담액은 6.5조 원임(고용노동부·금융감독원(2022. 4. 17), 「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」). 이를 활용하여 1인당 적립금 및 연 납입액을 환산함
16) 이를 보험료율로 환산하면 11% 수준임(연 납입액 505만 원/연간소득(383만 원×12개월)

〈표 3〉 분석대상자(수급자·가입자)의 1인당 적립금/연 납입액 현황(2021년 기준)

구분		분석대상자	1인당 금액
퇴직연금 수급	연금	16,984건(4.3%)	적립금: 1억 8,900만 원
	일시금	380,286건(95.7%)	적립금: 1,600만 원
	전체	397,270건(100%)	적립금: 2,400만 원
퇴직연금 가입	퇴직연금	684만 명(53.3%)	적립금: 4,315만 원(연 납입액 730만 원)
	퇴직금	512만 명(42.7%)	-
	전체	1,196만 명(100%)	-
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해지		90만 명(7.5%, 중도인출+해지) * 중도인출: 54,716명, 해지 842,821명	연 누수액: 1,519만 원1) * 중도인출 3,546만 원, 해지 1,387만 원
IRP 추가가입		1,286,437명(10.8%)	적립금 938만 원2)(연 납입액 505만 원3))

주: 1) 중도인출 1조 9,403억 원, 해지 11조 6,888억 원의 합(13조 6,291억 원)을 중도인출 및 해지자 수(90만 명)으로 나누어 산출함
2) 개인형 퇴직연금제도(IRP) 추가가입에 따른 적립금은 12조 623억 원으로 이를 IRP 추가 가입자 수(129만 명)로 나누어 산출함
3) 개인형 퇴직연금제도(IRP) 추가가입자의 연 납입액은 6.5조 원으로 이를 IRP 추가 가입자 수(129만 명)로 나누어 산출함

자료: 통계청 보도자료(2022. 12. 19), "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"; 고용노동부·금융감독원(2022. 4. 17), 「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」를 참고하여 정리함

나.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

○ 현 퇴직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근로소득(월 383만 원)의 16.4%로 추정되어 양호한 편이나 전체 대상자의 4.3%(수급률)만 해당되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이 일반화되지 못함

- 이를 일시금까지 포함한 전체 퇴직연금 수급대상자의 소득대체율로 추정하면 2.1%로 낮아져 현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함을 보여주며, 여기에는 중도인출 및 해지 등 적립금의 누수가 주요 원인임

○ 누수되는 1인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의 소득대체율은 1.3%로 추정되며, 퇴직연금 가입자 중 연간 7.5%가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분석됨

-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애기간 동안 4~5회 이직하는 것을 가정하여 해지자의 누수되는 소득대체율을 추정하면, △5.2% ~ △6.5% (△1.3%×4~5회)로 그만큼 소득대체율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

〈표 4〉 퇴직연금 수급 형태별 실현 소득대체율 및 누수율(실태 반영)

구분		산출방법	소득대체율1)
퇴직급여 수급	연금	{1억 8,900만 원/25년/12개월}/383만 원	16.4%
	일시금	{1,600만 원/25년/12개월}/383만 원	1.4%
	전체	{2,400만 원/25년/12개월}/383만 원	2.1%
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해지		{1,519만 원/25년/12개월}/383만 원	△1.3% *△5.2%~△6.5%(△1.3%×4~5회)

주: 1) 기 적립금 기준 소득대체율={적립금/수급기간(25년)}/12개월}/월 평균 근로소득(383만 원)으로 산출함
2) *은 생애기간 동안 평균 4~5회 이직 시 하는 것을 가정하여 추정한 해지자의 누수 소득대체율임

○ 2021년 퇴직연금 실태를 반영하여 현재 퇴직연금 가입 중인 자의 예상 소득대체율은 10.1%, 여기에 IRP 추가 납입에 의한 소득대체율(5.2%)를 추가하면 15.3%의 소득대체율이 확보가능할 것으로 추정됨

- 퇴직연금 가입자(대상 근로자의 53.3%)의 기 적립금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3.8%,[17] 10년 추가납입에 따른 추가 소득대체율은 6.4%여서 현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시점에서의 예상 소득대체율은 10.1%로 추정됨[18]
- 한편, IRP 추가가입자(대상 근로자의 10.8%)의 기 적립금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0.8%, 10년 추가납입에 따른 추가 소득대체율은 4.4%여서 추가 납입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5.2%로 추정됨
- 유의할 점은 동 분석대상자는 현 퇴직연금 가입자(가입 대상자의 53.3%)가 IPR 추가납부를(가입대상자의 10.8%) 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한 것이므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

〈표 5〉 퇴직연금 가입자(IRP 추가가입 포함)[1]의 예상 소득대체율(실태 반영)

구분		산출방법	소득대체율
퇴직연금 가입자	기 적립금	{4,315만 원/25년/12개월}/383만 원	3.8%[3]
	추가 적립금(연 납입액 활용)	{(730만 원×10년[2])/25년/12개월}/383만 원	6.4%[4]
	소계	-	10.1%
IRP 추가가입	기 적립금	{938만 원/25년/12개월}/383만 원	0.8%[3]
	추가 적립금(연 납입액 활용)	{(505만 원×10년[2])/25년/12개월}/383만 원	4.4%[4]
	소계	-	5.2%
전체		-	10.1%+5.2%=15.3%

주: 1) 근로자 평균연령이 43.4세인 현 퇴직연금 가입자를 가정함
2) 〈표 2〉에 따라 해당 연 납입액을 10년간 추가납입하는 것으로 가정함
3) 기 적립금 기준 소득대체율={적립금/수급기간(25년)]/12개월}/월 평균 근로소득(383만 원)
4) 추가 적립금 기준 소득대체율={[(연 납입액×10년)/수급기간(25년)]/12개월}/월 평균 근로소득(383만 원)

○ 퇴직연금에 납부 누락 없이 충실히 가입한 신규 퇴직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40년(25년) 가입 기준 13.3%(8.3%)로 추정되고, 추가 기여 및 투자수익률 제고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추가적으로 증대됨

-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해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신규 퇴직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(25년) 가정 시 13.3%(8.3%)로 추정됨
- 한편, 현행 퇴직연금 보험료율 8.3%에 IRP 추가납부를 통해 보험료율이 16.0%(보험료율 7.7%p↑)까지 증가할 경우, 소득대체율은 40년(25년) 가입 기준 13.3~25.6%(8.3~16.0%)[19]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
- 또한, 투자수익률이 3.0%에서 6.0%(3%p↑)까지 증가할 경우, 소득대체율은 40년(25년) 가입 기준 13.3~25.3%(8.3~12.3%)[20]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

---

17) 현 퇴직연금 가입 중인 자(평균연령 43.4세)의 기 적립금에 따른 소득대체율(3.8%)이 낮은 것은 근로기간 동안 중도인출 및 해지로 인해 적립금이 일부 누수되었음을 반영함
18) 동 추정에서의 분석대상은 〈표 5〉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와 유사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, 〈표 5〉의 25년 가입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다소 높은 것은 현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근로자(퇴직금 가입자 포함)의 평균소득보다 높기 때문임
19) 보험료율 1%p 증가 시 소득대체율은 40년(25년) 가입 시 1.6%p(1.0%p) 증가됨

○ 한편,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31.2%(40년 가입)를 충당할 경우 부부 기준 적정 소득대체율 72.3%를 충족하기 위해 퇴직연금 보험료율은 25.7%, 투자수익률은 8.1%를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됨

- 부부 기준 미충족 소득대체율(가칭)[21] 41.1%에 대해 퇴직연금의 기여 증대로 충당할 경우, 보험료율은 25.7%로 높아져야 하고 이는 현재(8.3%)보다 17.4%p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함을 의미함[22]
- 해당 비율은 퇴직연금만으로 산출한 결과이지만, 현실적으로는 퇴직연금 외 다른 소득원(예: 개인연금)과 합산한 재원을 보험료율로 환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
- 한편, 미충족 소득대체율 문제는 맞벌이보다 홑벌이 가구에서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전업주부 등 홑벌이 가구의 IRP 추가가입 등 별도의 노후준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
〈표 6〉 퇴직연금 보험료율의 조정에 따른 소득대체율 추정

(단위 : %, %p)

보험료율	가입기간 40년		가입기간 25년	
8.3%(현행)	13.3	-	8.3	-
10%(1.7%p↑)	16.0	(2.7)	10.0	(1.7)
13%(4.7%p↑)	20.8	(7.5)	13.0	(4.7)
16%(7.7%p↑)	25.6	(12.3)	16.0	(7.7)
* 25.7%(17.4%p↑)	41.1	(27.8)	25.7	(17.4)

주: 1) 투자수익률 3%, 수급기간은 25년으로 가정함
2) ( )안은 보험료율 8.3% 대비 보험료율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 차이 값임
3) *은 부부 기준 적정 소득대체율(72.3%)을 충당하기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(40년 가입 시 31.2%)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소득대체율(41.1%)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임

〈표 7〉 퇴직연금 투자수익율의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 추정

(단위 : %, %p)

투자수익률	가입기간 40년		가입기간 25년	
3%	13.3	-	8.3	-
4%(1%p↑)	16.3	(3.0)	9.4	(1.1)
5%(2%p↑)	20.2	(6.9)	10.8	(2.5)
6%(3%p↑)	25.3	(12.0)	12.3	(4.0)
* 8.1%(5.1p↑)	41.1	(27.8)	16.4	(8.1)

주: 1) 퇴직연금 보험료율은 8.3% 25년 수급 가정임
2) ( )안은 투자수익률 3% 대비 투자수익률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 차이 값임
3) *은 부부 기준 적정 소득대체율(72.3%)을 충당하기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(40년 가입 시 31.2%)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소득대체율(41.1%) 달성을 위한 투자수익률임

4. 결론

○ 우리나라의 적정 노후소득을 고려하면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므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고를 통해 보충할 필요가 있음

- 우리나라 고령자의 적정 소득대체율은 부부 72.3%(개인 46.2%) 추정되나, 현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15.1%로 매우 낮음

20) 투자수익률 1%p 증가 시 소득대체율은 40년(25년) 가입 시 3.0~5.1%p(1.1~1.5%p) 증가됨
21) 적정 소득대체율(예: 부부 기준 72.3%)에서 국민연금으로 충당가능한 소득대체율(예: 40년 가입 시 31.2%)을 뺀 값으로 정의함
22) 동일 논리로 투자수익률로 미충족 소득대체율을 충당할 경우 퇴직연금 투자수익률은 8.1%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됨(현 투자수익률을 3%로 보면 5.1%p 높아야 함)

- 현 퇴직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16.4%로 추정되나 적용대상이 4.3%에 그친다는 점에 한계가 있으며, 이는 중도인출 및 해지에 따른 연금자산 감소(소득대체율 기준 △1.3% 감소)로 일시금 수급을 부추기게 됨
- 중도인출 및 해지가 발생하지 않는 40년(25년) 가입기간을 가정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13.3%(8.3%)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가입기간이 길고 연금자산이 누수되지 않는 퇴직연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
-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및 투자수익률 상향 시 추가적으로 소득보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료율 상향(IRP 가입 제고)과 투자수익 제고가 향후 퇴직연금 제도 승패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

○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오래 가입하고 추가로 납부하며, 가입 중 누수를 막고, 수급단계에서 연금형태의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됨

-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증대하기 위해 최소 가입기간(예: 20년)을 충족하고 추가 납부한 가입자가 2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시 추가적 세제혜택(예: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의 50% 감면)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
- 가입 중 퇴직연금 자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55세에 퇴직하기 전까지는 이직 시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음
- 수급단계에서는 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'자동연금수령제도'(가칭)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